

선 거 공 고

우리농협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(2017.2.28.)되어 서안동농협 정관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선출해야 할 대의원 수: 80명(여성대의원 11명 포함)

영농회	선출 대의원수	영농회	선출 대의원수	영농회	선출 대의원수	영농회	선출 대의원수	영농회	선출 대의원수
안교1리	2	계평리	1	신양2리	1	도양2리	1	어담2리	1
안교2리	2	막곡1리	1	신양3리	1	구담1리	1	인금1리	1
안교3리	1	막곡2리	1	현애리	1	구담2리	2	인금2리	1
상리1리	1	수곡1리	1	오미1리	1	광덕1리	2	병산리	1
상리2리	1	수곡2리	1	오미2리	1	광덕2리	2	하회1리	1
상리3리	1	노리	1	괴정리	2	기산1리	1	하회2리	1
하리1리	1	죽전리	1	매곡1리	1	기산2리	2	가곡1리	2
하리2리	2	만운1리	1	매곡2리	1	신성1리	1	가곡2리	1
마애리	1	만운2리	1	소산1리	2	신성2리	2		
수1리	1	서미1리	1	소산2리	1	구호리	1		
수2리	1	서미2리	1	갈전리	2	금계리	1	계	9
회곡리	1	신양1리	1	도양1리	2	어담1리	1	소계	69명
계	15	계	12	계	16	계	17		

※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함

2. 선거일시 및 장소 : 각 영농회별 운영공개일 및 운영공개 장소

※ 영농회별 운영공개 일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일을 선거일로 한다.

3. 투표시간 : 오전 10시 ~ 오후 3시[5시간]

(단, 영농회 사정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조정가능하나 총 투표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)

4. 개표 : 투표시간 종료이후 즉시 개표 및 당선인에게 통지 및 공고

5. 선출해야 할 여성대의원 선출구역 및 일시·장소·투표시간

선거구	여성대의원 선출구역	선출 대의원수	선거일시	투표시간	선거장소
가	안교1·2·3리, 상리1·2·3리	1	2017.2.13	오전 10시 ~ 오후 3시	고추공판장 3층 대회의실
나	하리1·2리, 마애리, 수1·2리, 회곡리, 계평리	1			
다	1·2리, 수곡1·2리, 노리, 죽전리	1			
라	만운1·2리, 서미1·2리, 신양1·2·3리	1			
마	현애리, 오미1·2리, 과정리	1			
바	매곡1·2리, 소산1·2리	1			
사	갈전리, 광덕1·2리	1	2017.2.13	오전 10시 ~ 오후 3시	풍천지점 (구)연쇄점 창고
아	도양1·2리, 구담1·2리	1			
자	기산1·2리, 신성1·2리, 구호리	1			
차	금계리, 어담1·2리, 인금1·2리	1			
카	병산리, 하회1·2리, 가곡1·2리	1			
계		11			

※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함

6. 후보자 등록일 및 등록방법

가. 후보자등록일 : 2017.02.02.(목) ~ 2017.02.03.(금)[2일간]

나. 후보자등록장소 및 시간 : 우리농협 본점 안전총무과[2층]
(접수시간 : 오전 9시 ~ 오후 5시)

다. 등록방법 : 후보자등록마감시각까지 “후보자등록신청서”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조합에 등록신청 하여야 함

<첨부서류>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, 도장,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

※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(연체채무유무 확인서, 사업이용실적 총족유무 확인서,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, 공명선거실천 서약서)는 조합에 비치되어 있습니다

7. 후보자등록공고 : 등록마감일 다음날 주된 사무소 및 관할 신용사무소, 해당 영농회에 공고

8. 선거인 : 대의원 임기만료일전 180일(2016.09.01.)까지 우리농협 조합원으로 등재된 자

9. 피선거권자(후보자) : 대의원 임기 만료일전 180일(2016.09.01.)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6개월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출구역(선거구)조합원명부에 해당 선출구역(선거구)의 조합원으로 등재된 자 중 우리농협 정관 제122조 제2항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10. 당선인결정 :

가.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,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함

나.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함

11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농협 안전총무과(☎855-7102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01월 31일

서안동농업협동조합

